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알리안츠LTC더블연금보험 1701

나. 보험의 종류 : 1형 적립형, 2형 거치형

다. 연금지급형태

| 구 분 | 연금지급형태 |
|--------|-------------------------------|
| 생존연금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0년 ~ 40년, 100세보증 |
| 장기요양연금 | 최고 10년 / 20년 한도 |

2.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 보험기간 | |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Y세(45세~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나.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의 종류 | 연금개시나이 (Y)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 1형 적립형 | 45세 ~ 80세 | 5년 | 만15세 ~ min(Y-11,65)세 | 월납 |
| | | 7년 | 만15세 ~ min(Y-11,65)세 | |
| | | 10년이상 | 만15세 ~ min(Y-11,65)세 | |
| 2형 거치형 | 45세 ~ 80세 | 일시납 | 만15세 ~ (Y-10)세 | 일시납 |

※ 최대 연금개시나이는 “100세-보증지급기간+1” 세임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적립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는 2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거치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적립형

기본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다.

(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된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한다. 다만, ‘(다)’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나)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로 하며,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매회 5만원 이상)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라) ‘(다)’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턴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의 한도를 적용한다.

(2) 거치형

(가)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이며, 연간(보험년도 기준)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매회 5만원 이상)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다. ‘나’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 의 한도를 적용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1형 적립형에 한함)

가.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 할인조건 | 할인금액 |
|----------------------------------|---|
|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2.0% |
|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5% + 10,000원 |
|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금액의 3.0% + 35,000원 |

나. 장기납입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할인한다.

| 납입회차 | 할인율 |
|------------------|-----------------|
| 61회차 이상 120회차 이내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5% |
| 121회차 이상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7% |

(2) ‘가’에 따라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납입보험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1형 적립형에 한함)

가.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제외하고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 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1형 적립형에 한함)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1형 적립형에 한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된다.
- 마.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end{aligned}$$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는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 1), 회사채 가중치(β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end{aligne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 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 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적립형의 경우, 회사는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마.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매월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총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16. 기타’의 ‘나’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begin{aligned} & \text{■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quad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end{aligned}$$

다. ‘나’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4.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 나.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 에 따라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15.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의 판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및 기타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 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나” 항과 같이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나.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안내 절차

회사는 ‘가’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장기요양연금액의 변동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린다.

다.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계약자 확인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및 장기요양연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는다.

라.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기초율 변경

회사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연금연액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가’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연금연액산출기초율을 적용함
- (2) 재산출된 연금연액산출기초율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장기요양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16.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에 관한사항

| 구 분 | 가입금액 |
|--------|----------------------------|
| 1형 적립형 | 기본보험료 × 12 × MIN[납입기간, 10] |
| 2형 거치형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

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및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저 보증에 관한 사항(1형 적립형에 한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및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한도로 한다.

다. 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

을 안내한다.

라.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일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마.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